

의안번호	2208453
의 퇴 인	이소영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2.
추 계 번호	25C090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매년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기금에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조 8,457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됨
 - －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분만큼 일반회계 지출이 증가하게 되므로, 수입 증가분과 지출 증가분이 상계되어 추가재정소요는 0원이 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연금소득세 지원(안 제43조의2) (A - B)	0	0	0	0	0	0	0
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(A) (일반회계 전입금)	7,845	8,767	9,800	10,574	11,471	48,457	9,691
일반회계 지출 증가(B) (일반회계 전출금)	7,845	8,767	9,800	10,574	11,471	48,457	9,69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43조의2는 정부가 매년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(의무규정)하고 있으나, 이는 회계 간 재원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을 수반하지 않음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, 법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연금소득세 지원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분을 추계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,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

2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지원 규모는 연금소득세 지원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「2024~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」 발간 (2024.10.28.)을 위해 추정한 연금소득세 전망치를 준용
 -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「장래인구추계」와 국회예산정책처의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 I~IV」(2024. 10.) 보고서의 거시경제 전망치 등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득세 전망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
- 추계결과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금소득세는 4조 8,457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, 매년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기금에 지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액 역시 동기간 4조 8,457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됨
- 다만, 국민연금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일반회계의 지출(전출금)이 함께 증가하므로, 추가재정소요는 0원이 됨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재정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 증가분과 지출 증가분을 상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연금소득세 지원(안 제43조의2) (A - B)	0	0	0	0	0	0	0
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(A) (일반회계 전입금)	7,845	8,767	9,800	10,574	11,471	48,457	9,691
일반회계 지출 증가(B) (일반회계 전출금)	7,845	8,767	9,800	10,574	11,471	48,457	9,69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국가재정 측면에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, 법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분을 추계하여 제시함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